「건설산업기본법」위반 종합건설사업자 행정처분(등록말소)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위반 종합건설사업자의 등록말소 사실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24일 경기도지사

상 호 / 대표자	소 재 지	건설업 종 (등록번호)	처분내 용	처분사유	처분근거
㈜대혁건설 김**,김**	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70, 3층 (신동)	건축공사업 10-2738	등록말소 (2021.3.11.)	건설업 등록기준 (보증가능금액) 미달로, 영업정지 처분 (2020.4.18.~ 2020.9.17.)을 받은 후, 종료일까지 미달사유 미보완	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의2호